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2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권명호·임이자·송언석

김희국 · 정희용 · 최춘식

김형동 • 정운천 • 정진석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1.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 2.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 3. 제21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기증
- 4.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5. 동물의 사육 교육
- 6.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교육
- 7.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①
구청장은 <u>제14</u> 조에 따른 동물	<u>다음 각 호의 업무를</u>
<u>의 구조·보호조치 등을</u> 위하여	하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신 설></u>	1.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u>보호조치</u>
<u><신 설></u>	2.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u><신 설></u>	3. 제21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
	<u>기증</u>
<u><신 설></u>	<u>4.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u>
	<u>적인 처리</u>
<u><신 설></u>	<u>5. 동물의 사육 교육</u>
<u><신 설></u>	6.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 x]	<u>교육</u>
<u><신 설></u>	7.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신 설>	<u>동물보호 홍보</u>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u> ^ (1 </u>	o. 그 뒤에 등림국산격품구명으 로 정하는 업무
② ~ ⑩ (생 략)	<u>도 경하는 납부</u> ② ~ ⑩ (현행과 같음)